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403호

「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택시 운임의 자동산정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를 도입하였으나, 일부 할증을 자동화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, 수동할증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지정하고, 새로운 사업구역에 도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GPS를 통한 운임의 자동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완기능 적용(안 별표 5의2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교통서비스 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(검토의견)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 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화 : 044-201-3816 / 팩스 : 044-201-5581
- 이메일 : deoks77@korea.kr